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 2022. 12. 30. 조례 제3462호
일부개정 2023. 10. 10. 조례 제3548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0.]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5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5.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
7.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8.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7조(지원결정 등)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8조(협조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9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재난대비를 위한 전기·가스·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10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 | | | | |
|--|---|---|----------------|-------|
| 지 원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성 별 | 남 · 여 |
| | 전 화 번 호 | | 세 대 원 수 | |
| | 신청인과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친 족(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인() | | |
| | 대상자구분 | <input type="checkbox"/> 13세 미만 어린이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가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
| 주 택 유 형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다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 | | |
| 지 원 신 청 품 목 | <input type="checkbox"/>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 |
| | <input type="checkbox"/>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 | |
| | <input type="checkbox"/>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 | | |
| |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 | | |
| | <input type="checkbox"/> 침수 예방, 오수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지원 (서술 가능) | | | |
|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 | | | |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
| 담당자 확인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